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해명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8. 8.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 자	·과장 신광호, 사무관 김세묵 ·☎ (044) 201-3425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.

-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,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·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내일신문, 8.8.) >

◆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

-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·공시하여야 하나,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 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